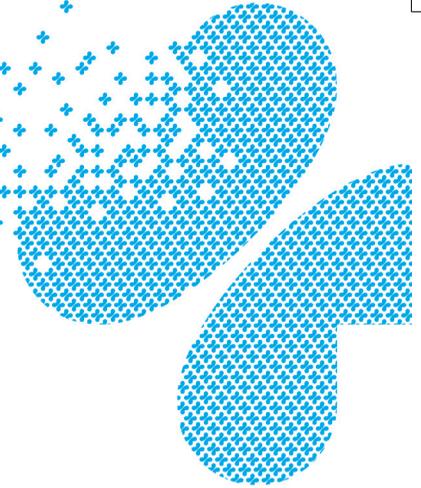


#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안전보건 네비게이션

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



## 서비스업 재해예방 사업

구 분	집중기술지원	기초안전지원
목 적	직능단체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재해다발 시설물·설비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	사업장 내 위험기계 및 장소에 대해 위험요소 확인, 안전수칙 전파 등 기초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
대 상	서비스업 중 기술, 교육 지원이 필요한 중위험군 이상 사업장 중심 ※2014년은 건물관리업 및 음식(집단 급식소 포함)업종을 대상으로 실시	서비스업 산업재해 점유율이 높은 7대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 전업종 ※ 7대 업종 ①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②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③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④교육서비스업 ⑤도·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⑥음식 및 숙박업 ⑦사업서비스업
내 용	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이행 확인을 통해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및 이행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해 다발위험 유형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여부 확인(체크리스트 활용)</li> <li>위험장소 및 설비에 대한 안전수칙(스티커 등) 부착 및 제공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전보건 자료 제공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</li> <li>재해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및 융자지원</li> </ul>	



## 안전보건 체크리스트

안전점검 포인트	근로자 안전행동 요령	확인
01 보행 전 장애물 확인	외부에서 청소, 환경정리 등의 작업을 할 때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고, 돌부리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확인 철저	<input type="checkbox"/>
02 차량 상부 작업 시 안전모 착용	트럭 적재함에 쌓인 물품 등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상부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	<input type="checkbox"/>
03 차량 뒤편 매달려 타기 금지	압축진개차/트럭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, 단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 뒤의 발판에 올라타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걷는 것이 안전	<input type="checkbox"/>
04 청소차량 작업 시 신호수 배치	청소작업에 트럭을 이용할 경우 작업자 또는 통행인이 차량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	<input type="checkbox"/>
05 쓰레기봉투 수거 시 날카로운 물체 사전 확인	생활폐기물 수거 할 때 쓰레기 봉투에 담긴 물품 중 유리 조각이나 소형 고철이 등에 베이거나 찔릴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봉투를 폐기물 수거 시 내용물 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
06 청소차량 운행 시 제한 속도 준수	원칙적으로 폐기물 차량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떨어짐 방지조치 및 안전운행속도 준수	<input type="checkbox"/>
07 도로 청소 시 반사판이 부착된 작업복 착용	도로를 청소할 때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할 경우 교통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옷에 반사판을 부착하거나 반사판 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	<input type="checkbox"/>
08 도로변 작업 시 경고표지판을 설치	도로변 화단정리, 가로수 가지치기, 쓰레기 청소작업 등을 할 때 3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표지판 설치	<input type="checkbox"/>
09 작업 전·후 스트레칭	출근 직후에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(작업 후에도 동일)	<input type="checkbox"/>
10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	대형 폐기물 등의 중량물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작업	<input type="checkbox"/>



## 02 발생 형태별 재해사례

### 폐기물수거

#### 넘어짐

##### 재해내용

비닐봉투를 밟고 넘어짐

##### 예방대책

- 바닥의 장애물 확인
-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



#### 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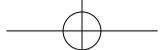
##### 재해내용

차량에 매달려 가다  
떨어짐

##### 예방대책

- 차량 후미에 탑승 금지
-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





## 폐기물처리

### 넘어짐

#### 재해내용

바닥의 기름에 미끄러짐

#### 예방대책

- 미끄러짐 방지 안전화 착용
- 미끄러짐 주의 경고표지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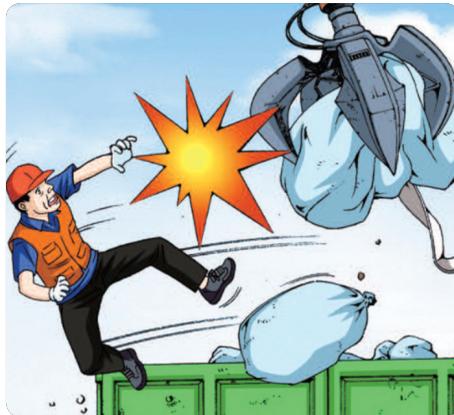
### 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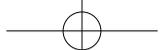
#### 재해내용

집게차 집게에 맞아 떨어짐

#### 예방대책

- 적재함 상부 탑승 금지
-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





## 폐기물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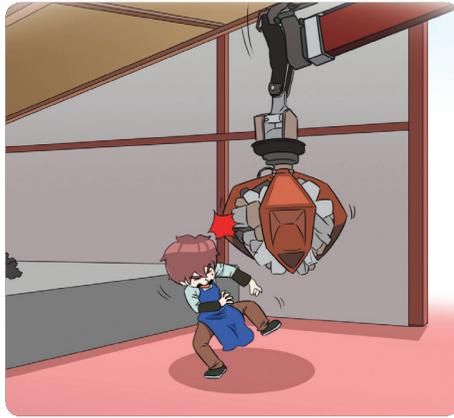
### 부딪힘

#### 재해내용

집게 크레인에 근로자 부딪힘

#### 예방대책

- 집게 크레인 반경 내 출입금지
-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



### 찢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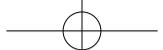
#### 재해내용

쓰레기 분리 중 못에 찢림

#### 예방대책

- 작업 전 위험물 미리 제거
- 안전화 착용
-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





## 공공근로

### 넘어짐

#### 재해내용

하천변 급한 경사에  
미끄러짐

#### 예방대책

- 계단 이용
- 바닥의 상태를 주시하며 이동



### 허리 다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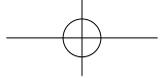
#### 재해내용

낙엽 마대를 올리다 허리  
부상

#### 예방대책

- 운반대차 이용
- 2인작업 실시
- 소량씩 나누어 운반





## 0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

### 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,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,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.

### 사업주의 의무

-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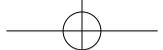
#### 의무사항

1.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.
2.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
3.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.
4.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 부착의 의무가 있습니다.
5.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6.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·보건을 유지증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7. 위험성평가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8.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### 사업주 법률상의 책임

(사업주는)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,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.

(예를 들면) 평소에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었다든지, 작업 시 사용하고 있었던 기계설비는 안전하게 방호조치 등을 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.



## 근로자의 의무

-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.

### 의무사항

1.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.
2.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3.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.

##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방법

-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[www.law.go.kr](http://www.law.go.kr)) > 검색창에 **산업안전보건법** 입력
- 고용노동부 접속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 > 법령마당 > **현행법령** > 산업 안전보건관련

## “일터안전” 함께 해결하겠습니다

근로자에게 꼭 필요한, 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지원과 자금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 
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.



## 04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

### 위험성평가란?

-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,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###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?

-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.

### 위험성평가 절차는?



###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은?

-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신청하실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도와드립니다.

위험성평가	지원내용
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	해당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일부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.
인정을 신청하는 경우	현장심사 후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인정결정을 해드립니다.

※ 신청방법은 위험성평가 안내 홈페이지([kras.kosha.or.kr](http://kras.kosha.or.kr)) 참조



## 05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

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 
(산업안전보건법 제5조, 제41조의2)

###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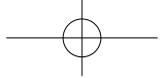
-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#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?

-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
- ※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

###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?

- ① 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
## 06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

사업주는 유해·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
(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, 위반 시 5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)

근로자는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.

(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, 위반 시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### 개인보호구

안전모



안전화



안전대



방진마스크



보안면



방독마스크



무릎보호대



팔꿈치보호대



오토바이 헬멧



철장갑



베임방지장갑



미끄럼방지장화









## 10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

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  
 (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, 건강진단 대상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1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
### 근로자 건강진단

#### ■ 종류 및 실시대상

종류	일반 건강진단	특수 건강진단	배치전 건강진단	수시 건강진단	*임시 건강진단
대상	전체근로자	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		건강장애 호소자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	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 근로자

#### ■ 건강진단 실시기관

-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검진기관

### 건강진단 절차

대상근로자 선정	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	건강진단실시 및 결과통보	사후처리	서류보존
일반검진 : 생산직, 사무직근로자 특수검진 :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	→ 건강진단기관에 의뢰	→ 진단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	→ 유소견자 작업전환 및 관리 등	→ 사업장에 5년간 보존

### 일반 건강진단 방법

-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.
-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,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
\* 특수, 배치 전 건강진단 등 기타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문의